

복지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- 동호회 등 조직화합 차원의 복지제도 지원은 조직 경영상 필수적인 부분이므로, 직원과의 유대감 제고 및 임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 제·개정 내용
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복지규정의 적용대상을 직원에서 상임 임원 및 직원으로 조정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BIFC 18층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처
- 담당자(이메일) : k01economist@khug.or.kr
- 전화번호 : 051-955-5385
- 팩스번호 : 051-955-5605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(기간 20일 미달 시)

- 복지수혜 대상의 조속한 확정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제도 운영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 제31조(기타) 공사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대여할 수 있다. < 신 설 > <부칙신설>	제2조(적용대상) (현행과 같음) 제31조(기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2조에도 불구하고 상임임원에게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(2021. 0. 00) <u>이 규정은 2021년 6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u>

복 지 규 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한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직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대상)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 <개정 '99.7.8, 2014. 6.13>

제2장 안전과 체육

제3조 (안전과 체력관리)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과 체력관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, 국민체육진흥법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 (체육행사) ① 공사는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'99.7.8><개폐정리 2015. 6.30>

② 직원은 따로 정하는 체력관리운영방침에 따라 각종 체육행사와 체력대회 및 교양활동등을 할 수 있다. <개정 '99.7.8><개폐정리 2020. 9. 9>

③ 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소·시설 및 차량운행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'99.7.8><개폐정리 2015. 6.30>

제5조 (안전 및 위생교육) 공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담당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 및 위생교육을 실시한다. <개정

‘99.7.8><개폐정리 2015. 6.30>

제3장 의 료

제6조 (건강진단) ① 공사는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개정 ‘99.7.8><개폐정리 2015. 6.30>

② <삭제 ‘99.7.8>

③ 제1항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사의 부담으로 한다. <개정 ‘99.7.8><개폐정리 2015. 6.30>

④ 제2조에도 불구하고 상임임원에게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0.23.><개폐정리 2020. 3.17>

제7조 내지 제10조 <삭제 2000.5.17>

제11조 <삭제 ‘99.7.8>

제12조 <삭제 2000.5.17>

제4장 학자금

제13조 (학자금지급) ① 공사는 직원의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한다. <개정 ‘99.7.8, 2014. 6.13><개폐정리 2015. 6.30>

1. <개정 2000.5.17, 2006.3.16., 2011.11.24.> <삭제 2014. 6.13>

2. <개정 2000.5.17.> <삭제 2014. 6.13>

3. <개정 ‘95.9.5> <삭제 2014. 6.13>

4. <삭제 2014. 6.13>

②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1.11.24.><개정 2014. 6. 13><개폐정리 2020. 9. 9>

제13조의2 (학자금대여) 공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원의 대학생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, 대여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개폐정리 2015. 6.30, 2020. 9. 9>

[본조신설 2000.5.17]

제14조

[본조삭제 2014. 6. 13]

제15조

[본조삭제 2014. 6. 13]

제16조

[본조삭제 2014. 6. 13]

제17조 <삭제 2011.11.24>

제5장 임차주택 및 주택자금대여

제18조 (임차주택의대여)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주택을 임차하여 대여할 수 있다. 다만, 공사로부터 주택임차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고 있는 직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'99.7.8, 단서신설 2006.3.16><개폐정리 2015. 6.30>

제19조 (주택자금의 대여) 직원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주택이 없는 직원이 주택을 임차·매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는 그 소요자금중 일부를 주택임차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여할 수 있다. <개정 '94.5.25, '99.7.8><개폐정리 2015. 6.30>

제20조 (합숙소)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독신직원이 많은 때에는 그 숙식편의를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21조

[본조삭제 2014. 6. 13]

제22조

[본조삭제 2014. 6. 13]

제23조

[본조삭제 2014. 6. 13]

제24조 (시행세칙) 임차주택등의 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'94.5.25>

제6장 기타 후생

제25조 <삭제 2006.12.29>

제26조 내지 제28조 <삭제 2000.5.17>.

제29조 <삭제 2006.12.29>

제29조의 2

[본조신설 2007.3.29.]

[본조삭제 2014. 6. 13]

제29조의 3

[본조신설 2008.2.13.]

[본조삭제 2014. 6. 13]

제30조

[본조삭제 2014. 6. 13]

제31조 (기타) ① 공사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시설을 설치·운영 또는 대여할 수 있다. <개정 '99.7.

8><개폐정리 2015. 6.30>

② 제2조에도 불구하고 상임임원에게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<신설 2021.06.00>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3.6.4)

이 규정은 199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4.5.25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4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규정의 개정) 계산규정 별표1(계정과목)의 1. 차변계정중 주택자금대
여금란의 해소를 “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대금”을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임
차자금 및 주택구입자금“으로 한다.

부 칙(1995.9.5)

이 규정은 199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9.7.8)

이 규정은 199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0.5.17)

이 규정은 200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7.27)

이 규정은 200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11.16)

이 규정은 200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3.16)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12. 8)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12. 29)

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3. 29)

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12. 31)

이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2. 13)

이 규정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되,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1. 6. 9)

이 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11. 24)

이 규정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12. 30)

이 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4. 30)

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 6.13>

이 규정은 201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 6.30>

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7.10.23>

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 3.17>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 9. 9>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 6. 00>

이 규정은 2021년 6월 00일부터 시행한다.